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6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신영대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2

I. 개요

1.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6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0.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신영대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현 행	신영대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송언석의원안
☐ 기본공제(제 50조) ○ 대상자: 중 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u>150만원</u>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 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u>150</u> <u>만원 (자녀</u> <u>300만원)</u>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 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u>200만원</u>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 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u>300만원</u>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 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수 × 연 <u>150</u> <u>만원 이상의</u> <u>금액으로서</u> <u>기준연도 대</u> <u>비 소비자물</u> <u>가지수 상승</u> <u>분을 반영하</u> <u>여 매년 대</u> <u>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금액</u>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총급 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 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총급 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 가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영대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80), 서영교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295), 정일영의원안 2024. 8. 16. 제출(의안번호 2961), 송언석의원안 2024. 9. 24. 제출(의안번호 4213)

□ 4건의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신영대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현행과 같이 150만원으로 하되 20세 이하 자녀에 한하여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서영교의원안과 정일영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송언석의원안은 기본공제금액을 연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물가 상승, 저출생 문제 심화,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등에 따라 인당 기본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기의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현행 기본공제 금액이 설정된 2009년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

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대비 2023년 물가상승률이 33%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공제액 확대는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둘째, 송언석의원안과 같이 기준연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정하도록 하면 매년 기본공제금액에 경제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어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공제수준이 결정될 것이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기본공제액 상향은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높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큰 혜택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2022년 기준 33.6%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자가 다시 증가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48.1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또한, 기본공제액의 경우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데,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 하에서 기본공제액의 상향의 효과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는 3,074만 8,997명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은 73조 3,597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과 같이 인적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수반될 것임.

또한, 2023년도 세수결손이 약 56조 4,000억원에 달하였고 2024년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약 29조 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022년 기준 종합소득·근로소득 관련 기본공제 적용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금액
종합소득	10,269,883	24,054,848
근로소득	20,479,114	49,304,931
합 계	30,748,997	73,359,779

자료: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국세통계연보(3-1-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국세통계연보(4-2-2), 국세통계포털(TASIS)

셋째, 기본공제의 물가상승률 연동은 적정 조세부담 유지를 위한 입법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외의 다양한 조세 정책 결정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자동조정 장치가 반드시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